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8.

발의자 : 김영진 · 박지원 · 허영
박홍배 · 송재봉 · 강준현
임호선 · 김우영 · 서삼석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, 수의계약,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 (이하 “공매등”이라 함)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 · 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,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띠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호 및 제4호”를 “제2호, 제4호 및 제5호”로 한다.

5. 가상자산의 매각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3조(공매등의 대행)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(이하 이 조에서 “공매등”이라 한다)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.	제103조(공매등의 대행) ① 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가상자산의 매각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제1호, <u>제2호 및 제4호</u> 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.	③ ----- ----- <u>제2호, 제4호 및 제5호</u> -----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